

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

귀하(귀사)가 년 월 일 제출한 _____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_____
__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66조제2항)

신 청 인	성 명 (상 호)	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
	주 소 또는 거 소 (사업장)	
행정처분청		

※ 「국세기본법」 제66조제2항

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·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끝.

발 신 명 의



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◆ 담당자 : ○○세무서(지방국세청) 납세자보호담당관 ○○○ 조사관(전화 : , 전송 :)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 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 전송() 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